

대구지방법원 2022. 8. 26 선고 2021가단117484 판결 [회사매매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반석

담당변호사 임재화, 조이황

변 론 종 결 2022. 7. 15.

판 결 선 고 2022. 8. 2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5. 18.부터 2022. 8. 26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7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‘C’이라는 상호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운영하던 D(원고의 아들, 아래의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,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전까지는 사업명의인인 D로 표시한다)는 2021. 1. 12.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(이하 ‘이 사건 인수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았다.

회사 인수 계약서

(제1조) C(의료폐기물 수집 · 운반업체) 대표 D는 “갑”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장(회사명:

C)에 대한 일체의 모든 권한과 자산, 거래처, 허가권, 자재 등을 B “을”에게

양도한다.

1. 허가권

2. 매입 매출 거래처 일체

3. 자산일체

가. 차량 3대(통상 1톤 2대, 0.45톤 1대) ※지입차량 별도

나. 전송기기(리더기) 2대, 박스 외 비품 자재

다. 매출 채권과 매입금(외상) 일체

라. 기타 기기(소독장비 3식)

(제2조) 회사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일금 일억원정(₩100,000,000)을 지불하도록 한다.

1. 계약금 : 20%(₩20,000,000)를 2021년 1월 12일에 지급하고,

2. 중도금 : 30%(₩30,000,000)는 법인설립 완료시

3. 잔금 : 50%(₩50,000,000)는 업무 인수 · 인계 완료시(업무특성상)

※ 업무 인수·인계는 약 2개월 정도로 잡는다.

만약,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“을”은 회사를 다시 “갑”에게 양도하여야 하며,
관련된 비용은 모두 “을”이 부담한다.

(제3조) “갑”은 “을”의 회사인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(제4조) ~ (제6조) 생략

* 특약사항

1. 회사를 인수함에 법적인 문제는 없어야 함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, 서명날인 후 “갑”과 “을”이 1통씩
보관한다.

(갑)

주소 : 대구 북구 E

회사명 : C

사업자번호 : (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)

대표자 : D (인)

연락처 : (전화번호 1 생략)

A (전화번호 2 생략) 자필사인

(을)

주소 : 대구 중구 F

대표자 : B (인)

연락처 : (전화번호 3 생략)

나. D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2021. 1. 27. 주식회사 G(이하 ‘이 사건 회사’라
한다)을 설립하였다.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는 D, 감사는 피고로 등기되었다. 피고는
2021. 2. 3. D에게 중도금 중 1,0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다. D는 2021. 2. 19. 북대구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교부받았고,
2021. 3. 5. C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을

체결하였다. 이 사건 회사는 위 사업자등록증,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21. 4. 22. 대구지방법원청, 같은 달 27.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았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과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을 동시에 이행하기로 합의하였다.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의 선이행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잔존 중도금 2,000만 원과 잔금 5,000만 원 합계 7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

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라 D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. C의 사업자명의인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D인 사실, 이 사건 인수계약서에 D의 날인이 되어 있고, 피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D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, 을 제1, 2, 4, 5,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 사실만으로 D를 이 사건 인수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고,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의 양도인을 원고로 인식하고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타당하다.

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C를 D와 함께 운영하였는데 D가 2020. 3.경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바람에 원고가 단독으로 C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. 실제로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에 D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, 피고는 D의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의 관여 여부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.

②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인수계약의 조건 등을 정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의 수신인으로 D뿐만 아니라 원고도 지정하였고,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에 따른

문제를 원고에게 문의하거나 항의하였다.

③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한 H은 원고를 C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지칭하였고, 이 사건 회사 설립에
관여한 I도 이 사건 인수계약에 있어 피고의 상대방을 원고라고 인식하였다.

④ 이 사건 인수계약서 하단 ‘갑’ 부분에 원고가 서명하고 사인하였다.

다. 피고의 잔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의무

1) 중도금 지급 의무

피고는 ‘법인설립 완료시’는 ‘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설립 완료시’를 의미하는 것이고, 원고의 위
의무는 피고의 중도금 지급 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이 사건 인수계약 제2조 잔금
지급 부분에 ‘피고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피고는 회사를 다시 D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’고
기재되어 있는 점, 이 사건 인수계약은 C의 양수도를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, 법인설립은 피고가
대표자인 법인설립으로 해석할 수 있다. 그러나 앞서 든 증거, 갑 제6, 7호증의 기재, 을 제7호증의
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는 원고에게
잔존 중도금 2,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①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고, 이 사건 회사 설립 절차는 피고 측
I 회계사가 대행하였다. 원고가 피고 몰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로 등기한 것으로 보기는
어렵고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것으로
판단된다.

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가 아닌 D로 등기한 것은 이미 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은
C의 사업명의인인 D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
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.

③ C의 일체 권리와 의무가 이 사건 회사에 양도되었고,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21. 1. 27.로부터
약 3개월 후 이 사건 회사가 대구광역시 북구청으로부터 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았다. 이 사건
인수계약에 따른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는 ‘업무 인수 · 인계 완료시’에 발생하는데, 원고가
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전부 받지 않았음에도 C의 직원 J은 2021. 3. 말경부터 2021. 4. 27.까지

피고의 아들 K에게 거래처, 거래현황 등을 인수·인계하였다(K은 이 법원 2021가단130050호로 D를 상대로 C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2021. 3. 29.부터 2021. 4. 27.까지 일한 것에 대한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).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을 피고의 중도금 지급에 대한 선이행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인수·인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다.

④ 원고는 2021. 2. 5.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변경을 위하여 D의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잔존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명의변경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잔존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.

⑤ C의 자산, 허가권 등이 이 사건 회사에 모두 양도되었고,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대한 인수·인계를 완료한 상황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, 주주 명의 변경 의무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마지막 의무로서 계약의 해석상 또는 형평상 피고의 잔존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의무와 서로 동시이행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

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인수·인계를 완료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 변경 등 의무를 이행할 테니 잔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선이행을 요구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.

2) 잔금 지급 의무

이 사건 인수계약 제2조 마지막 부분에 ‘피고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피고는 회사를 다시 D에게 양도하여야 한다.’고 기재되어 있고,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잔금 지급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.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,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에게 잔금 지급 대신 C 또는 이 사건 회사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. C의 자산 등은 이 사건 회사에 모두 이전되었고,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과 주주 모두 D이므로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권리관계의 반환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잔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잔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3) 소결

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중도금 2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

회사 설립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1. 5. 18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. 8. 26.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

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것이 피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의무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존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받아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해주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. 이에 피고는 2021. 4. 30. 원고와 D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, 위 우편이 2021. 5. 3. 원고 등에게 도달하였다.

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2021. 5. 24. 피고의 남편 L에게 피고가 위 내용증명 우편에 원상회복으로 청구한 돈을 3회에 나누어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, 이 사건 인수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.

이 사건 인수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.

나. 판단

1)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관하여

원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, 주주 명의 변경 의무와 피고의 잔금 지급 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, 피고가 원고에게 잔금의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2) 합의해제에 관하여

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,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

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(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다17093 판결 등 참조).

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 해제와 35,546,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후인 2021. 5. 24. L에게 ‘세 번에 나눠서 주겠다’, ‘담보를 제공할겠다’는 취지로 말하였다(을 제2, 4호증). 그러나 L가 원고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고, L 또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반환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조율도 없었다.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인수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.

4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명환